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트 로보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로보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트 로보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8년 4월 2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년 4월 2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 개시일(2017년 4월 2일) 이후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사항

[붙임]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후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로보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 코드: BF687)

| 투자 위험 등급 | | | | | |
|----------------|----------|----------------|----------|----------|----------------|
|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낮은 위험 | 낮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높은 위험 | 매우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트러스트로보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 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 | | | |
|-----------|--|-----------|--------------------------|
| 집합투자기구 특징 |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으로 자산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투자대상자산(집합투자기구) 선정과 최적의 자산배분을 결정하여 낮은 변동성과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 |
| 집합투자업자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02-6308-0500) | | |
| 모집(판매) 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계속 모집할 수 있음 | 모집(매출) 총액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
| 효력발생일 | 2018. 4. 25.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
| 판매회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종류(Class) | A | Ae | C | Ce | S | S-P | Cp | Cp-E | Cp2 | Cp2-E | |
|-----------|---------------|---------------|--------|------------|----------------------|--------------------------|----------|-----------------------|----------|-----------------------|-------|
| 가입자격 | 가입제한없음 | 인터넷을 통해 가입 | 가입제한없음 | 인터넷을 통해 가입 | 펀드수퍼마켓을 통해 가입 | 펀드수퍼마켓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 클래스 | 연금저축 클래스 |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 클래스 | 퇴직연금 클래스 |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클래스 | |
|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8% 이내 | 납입금액의 0.4% 이내 | - | - | 3년 이내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 | - | - | - | |
| 환매수수료 | 없음 | | | | | | | | | | |
| 보수 (연, %) | 판매 | 0.400 | 0.200 | 0.820 | 0.410 | 0.200 | 0.180 | 0.500 | 0.250 | 0.400 | 0.200 |
| | 운용 등 | 0.480 | 0.480 | 0.480 | 0.480 | 0.480 | 0.480 | 0.480 | 0.480 | 0.480 | 0.480 |
| | 기타 | 0.003 | 0.003 | 0.003 | 0.003 | 0.003 | 0.003 | 0.003 | 0.003 | 0.003 | 0.003 |
| | 총보수·비용 | 0.883 | 0.683 | 1.303 | 0.893 | 0.683 | 0.663 | 0.983 | 0.733 | 0.883 | 0.683 |
| 합성 총보수·비용 | 1.383 | 1.183 | 1.803 | 1.393 | 1.183 | 1.163 | 1.483 | 1.233 | 1.383 | 1.183 | |

※ 주식사항

1) 상기에 기재되지 않은 I, W 클래스에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상기의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 및 기타비용과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상기의 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5%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판매 및 운용 보수 등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지급되며 기타 보수는 사유 발생시 지급됩니다.

| | | | |
|-------|---|-------|---|
| 매입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시 이전: 제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17 시 경과후 : 제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환매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시 이전: 제 5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9 영업일에 지급 · 17 시 경과후 : 제 6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10 영업일에 지급 |
| 기준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법 :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전영업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전영업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 공시장소 : 집합투자업자·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판매회사 영업점 |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5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발견하거나 인덱스 산출기관에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트러스톤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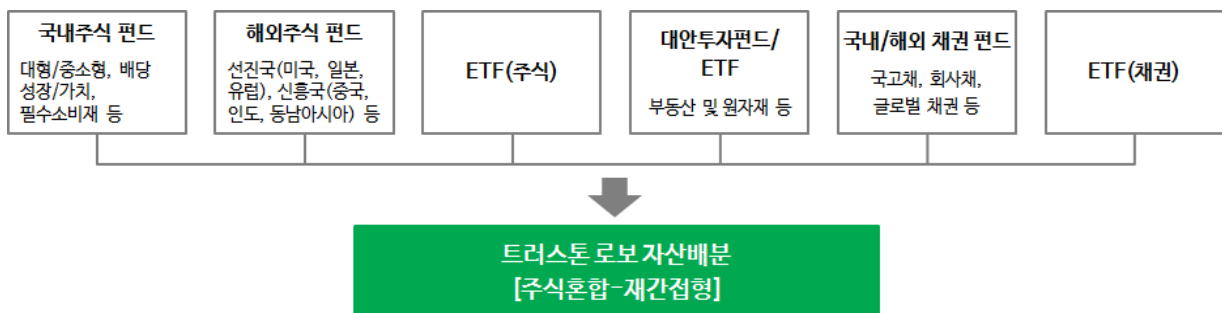
□ 트러스톤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 ① 파운트의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인 Blue Whale 엔진으로 자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자산군을 구분하고 자산군내 각 펀드의 스타일/가치 분석을 통해 투자 후보군 펀드를 선정합니다.
- ② Truston Risk Appetite Index(주식/채권 비중 배분모델)로 위험자산 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후 국내 및 해외 주식형 펀드·ETF, 대안투자 펀드·ETF, 채권 펀드·ETF 등의 최적 자산배분을 결정합니다.
- ③ 정기, 수시로 자산배분 비율을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합니다. 또한 대외변수가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 정성적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에서 도출된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을 조정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파운트투자자문의 투자자문을 받습니다. 파운트투자자문은 투자 대상 자산과 관련된 조사 및 분석 업무,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의견 및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문내용을 참고하여 당사는 투자대상종목 및 투자비율 등을 최종 결정하여 운용합니다.

[투자 대상]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 이하를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2018. 3. 31. / 단위:개,억원)

| 성명 | 출생 년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 다른 운용 자산 규모 | |
| 신홍섭 | 1974년 | 책임 운용역 (상무) | 6 | 2,424 | 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KAIST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hr/> 경력 99.09 ~ 01.03 현대증권 영업추진부 03.01 ~ 05.06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팀 05.07 ~ 13.04 골드만삭스자산운용 Investment Management Division 13.04 ~ 14.01 한화자산운용 FI운용2팀 14.02 ~ 15.11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15.11 ~ 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자산배분팀/ 채권운용본부 |
| | | 부책임 운용역 (대리) | | | 2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운용으로 자산배분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및 개수 : 해당사항 없음

5. 투자실적 추이

-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계량 모델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종목선정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통한 계량모형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계량 모형을 활용한 운용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량모델의 경우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재간접 투자 위험 | <p>이 투자신탁은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p> <p>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p> <p>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
| 국가위험 | <p>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p> |
| 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 <p>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다이나믹 코리아50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다이나믹 코리아50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서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년 구간수익률의 표준편차)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 등급 분류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① 변동성 관리

재간접펀드에 편입된 펀드별 Benchmark(이하 “BM”)와 Tacking Error(이하 “TE”)추이를 관리합니다.

→ TE가 커질수록 의도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한 노출 증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Information Ratio 확인 후 편입 펀드의 편출입 여부 결정합니다.

- ② 수익률 관리
 - 재간접펀드에 편입된 펀드별 BM대비 MDD(Maximum Draw Down)를 관리합니다.
 - 주간 단위로 편입된 펀드별 BM대비 펀드의 괴리율을 관리합니다.
- ③ Stress Test
 - 위험징후 발생 시 위험요소별 Stress 상황을 가정하여 최대손실 가능성 점검합니다.
 - 예) 채권: 국고채 3년/5년/10년 평균 YTM의 주간 등락률 ±10%

Ⅲ. 집합투자기구 기타 정보

1. 과세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과세원칙 | 세율 | 과세시기 |
|------|---------------|---|-------------|
| 투자신탁 |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 - |
| 수익자 | 원천징수 | 15.4%(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됨 |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

(2)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과세 및 세제혜택

| 과세대상 | 과세 시기 | 세율 | 세제혜택 |
|------------------------------|---|--|---|
| 연금저축 클래스 수익자 (Cp, Cp-E, S-P)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 | 1)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득세 별도 |
| 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자 (Cp2, Cp2-E) | 퇴직연금 수령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 | |

※ 상기의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클래스의 과세관련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퇴직연금소개 →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 펀드코드 |
|---------------------------------|-------|
| 트러스톤 로보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BF687 |
| Cp2 | BF688 |
| Cp2-E | BH046 |
| A | C8438 |
| Ae | C8439 |
| C | C8440 |
| Ce | C8441 |
| S | C8442 |
| Cp | C8443 |
| Cp-E | C8444 |
| S-P | C8445 |
| I | C8446 |
| W | C8447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혼합-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명(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규모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 펀드코드 |
|--------------------------------|-------|
| 트러스톤 로보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BF687 |
| Cp2 | BF688 |
| Cp2-E | BH046 |
| A | C8438 |
| Ae | C8439 |
| C | C8440 |
| Ce | C8441 |
| S | C8442 |
| Cp | C8443 |
| Cp-E | C8444 |
| S-P | C8445 |
| I | C8446 |
| W | C8447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사항 |
|------------|---|
| 2017.04.18 | - 투자신탁 최초 설정 |
| 2018.04.00 | - 투자신탁 명칭 변경 - A, Ae, C, Ce, S, Cp, Cp-E, S-P, I, W 클래스 신설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 사 명 |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 (성수동 1 가) (☎ 6308-0500) |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8. 3. 31. / 단위:개,억원)

| 성명 | 출생 년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 다른 운용 자산 규모 | |
| 신홍섭 | 1974년 | 책임 운용역 (상무) | 6 | 2,424 | 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KAIST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hr/> 경력 99.09 ~ 01.03 현대증권 영업추진부 03.01 ~ 05.06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팀 05.07 ~ 13.04 골드만삭스자산운용 Investment Management Division 13.04 ~ 14.01 한화자산운용 FI운용2팀 14.02 ~ 15.11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15.11 ~ 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자산배분팀/ 채권운용본부 <hr/>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 | | 부책임 운용역 (대리) | | | 2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운용으로 자산배분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및 개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 트러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트러스트로보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책임운용전문인력과 같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구 분 | 성 명 | 운용기간 | 비 고 |
|--------|-----|-----------------|-----|
| 부책임운용역 | 신근수 | 2017.09.25 ~ 현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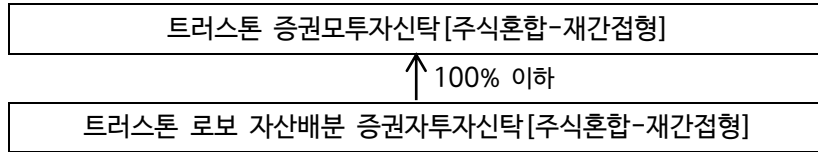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트러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구 분 | 성 명 | 운용기간 | 비 고 |
|--------|-----|-----------------|-----|
| 부책임운용역 | 신근수 | 2017.09.25 ~ 현재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형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 류 | 가입자격 |
|--------------------------|---|
| Cp2 클래스 (펀드코드 : BF68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이면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 Cp2-E 클래스 (펀드코드 : BH04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이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 A 클래스 (펀드코드 : C8438)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 Ae 클래스 (펀드코드 : C8439)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 C 클래스 (펀드코드 : C8440) |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Ce 클래스 (펀드코드 : C8441)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 S 클래스 (펀드코드 C8442)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 Cp 클래스 (펀드코드 : C8443)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Cp-E 클래스 (펀드코드 : C8444)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 S-P 클래스 (펀드코드 : C8445)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I 클래스 (펀드코드 : C8446) |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
| W 클래스 (펀드코드 : C8447)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트러스톤증권모펀드 [주식혼합-재간접형] | |
|----------------------------|--------|
| 트러스톤로보자산배분증권펀드 [주식혼합-재간접형] | 100%이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모투자신탁명 |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
|---|---|
|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혼합- 재간접형] |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 투자합니다. |
| | 투자목적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으로 자산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투자대상자 산(집합투자기구)와 최적의 자산배분을 결정하여 낮은 변동성과 장기 안정 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 |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 |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① 파운트의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인 Blue Whale 엔진으로 자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자산군을 구분하고 자산군내 각 펀드의 스타일/가치 분석을 통해 투자 후보군 펀드를 선정합니다. ② Truston Risk Appetite Index(주식/채권 비중 배분모델)로 위험자산 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후 국내 및 해외 주식형 펀드·ETF, 대안투자 펀드·ETF, 채권 펀드·ETF 등의 최적 자산배분을 결정합니다. ③ 정기, 수시로 자산배분 비율을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합니다. ④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상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는 2017년 3월 30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으며 신탁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집합
 투자업자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5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
 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
 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조건 |
|-------------------------|---------------------------------|----------------------------|
| 1)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100%이하 | ▶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 |

| | | |
|----------|--|---|
| 3) 유동성자산 | 10%이하 (단, 40%이하 범위 내에서 10% 초과 가능) |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 매수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2)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3)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 트러스트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조건 |
|-------------------|-----------------------------------|--|
| 1) 집합투자 증권 | 50%이상 | ▶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2) 지분증권 (주식 등) | 40%이하 |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 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 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에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3) 채권 | 40%이하 |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4) 자산유동화 증권 | 40%이하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 A0 이상)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5) 어음 | 40%이하 |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 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6) 파생상품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 ▶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 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7) 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총액의 50% 이하 |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
| 8) 증권 대여 | 증권 총액의 50%이하 |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

| | | |
|-----------------------|-------|---|
| 9) 증권 차입 | 20%이하 | ▶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
|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
| 11) 유동성자산 | - |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 매수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내용 |
|------------------|---|
|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 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트러스트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구분 | 내용 |
|------------------|--|
|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 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 집합투자증권 투자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음
- 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동일종목 투자

-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4) 파생상품 투자

-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라) 법시행령 제80 조 제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나) 2)-가), 나),3),4)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트러스트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발견하거나 인덱스 산출기관에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트러스트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 ① 파운트의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인 Blue Whale 엔진으로 자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가능한 서로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자산군을 구분하고 자산군내 각 펀드의 스타일/가치 분석을 통해 투자 후보군 펀드를 선정합니다.
- ② Truston Risk Appetite Index(주식/채권 비중 배분모델)로 위험자산 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후 국내 및 해외 주식형 펀드·ETF, 대안투자 펀드·ETF, 채권 펀드·ETF 등의 최적 자산배분을 결정합니다.
- ③ 정기, 수시로 자산배분 비율을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합니다. 또한 대외변수가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 정성적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에서 도출된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을 조정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파운트투자자문의 투자자문을 받습니다. 파운트투자자문은 투자 대상 자산과 관련된 조사 및 분석 업무,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의견 및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문내용을 참고하여 당사는 투자대상종목 및 투자비율 등을 최종 결정하여 운용합니다.

- 당사는 이 투자신탁의 효율적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파운트투자자문을 선정하였습니다. 투자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 중에 투자자문업자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투자대상 및 비중 예시]

| 비중 | ~80% | | ~40% | | ~20% |
|-------|----------------------------|---------------------------------------|------------------------|---------------------------------------|----------------------|
| | 주식 펀드/ETF | | 채권 펀드/ETF | | 대안투자펀드/ETF |
| 투자 대상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부동산 및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펀드 |
| | 대형/중소형, 배당, 성장/가치, 필수소비재 등 | 선진국(미국, 일본, 유럽), 신흥국(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 국고채/회사채, 단기채/중기채/장기채 등 | 선진국(미국, 일본, 유럽), 신흥국(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 |

※ 상기의 투자대상 및 비중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나, 펀드규모, 시장상황 등에 따라 운용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프로세스]



| 구분 | 내용 |
|----------------|--|
| 펀드 필터링 | ▪ 클러스터링(Clustering): 펀드들을 클러스터링 로직을 활용하여 가능한 서로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자산군들로 분류 |
| 펀드 분석 | ▪ 클러스터링된 각 펀드군에서 성과 양호 펀드 선정 ▪ 시장의 흐름 파악 후 투자 후보군 선정 |
| 자산배분/ 펀드 선정 | ▪ 스타일/가치 분석으로 최종 편입 펀드 선정 ▪ 모멘텀 전략 기반 성과 우수한 펀드 도출 |
| 포트폴리오 구성 | ▪ 트러스트론의 Truston Risk Appetite Index로 위험 자산 비율 적정성 확인 ▪ 변동성 및 펀드별 상관관계에 따른 비중 조절 및 포트폴리오 구성 |
| 모니터링 및 리밸런싱 | ▪ 자산배분, 수익기여도 리밸런싱 히스토리 등 분석 ▪ 투자기간, 시장상황에 따라 정기 / 수시 리밸런싱 실시 |

2) 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① 변동성 관리

재간접펀드에 편입된 펀드별 Benchmark(이하 “BM”)와 Tacking Error(이하 “TE”)추이를 관리합니다.

→ TE가 커질수록 의도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한 노출 증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Information Ratio 확인 후 편입 펀드의 편출입 여부 결정합니다.

② 수익률 관리

- 재간접펀드에 편입된 펀드별 BM대비 MDD(Maximum Draw Down)를 관리합니다.

- 주간 단위로 편입된 펀드별 BM대비 펀드의 괴리율을 관리합니다.

③ Stress Test

- 위험징후 발생 시 위험요소별 Stress 상황을 가정하여 최대손실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예) 채권: 국고채 3년/5년/10년 평균 YTM의 주간 등락률 ± 10%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 이하를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으로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예외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다이내믹 코리아50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다이내믹 코리아50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나. 특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계량 모델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종목선정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통한 계량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계량 모델을 활용한 운용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량모델의 경우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재간접 투자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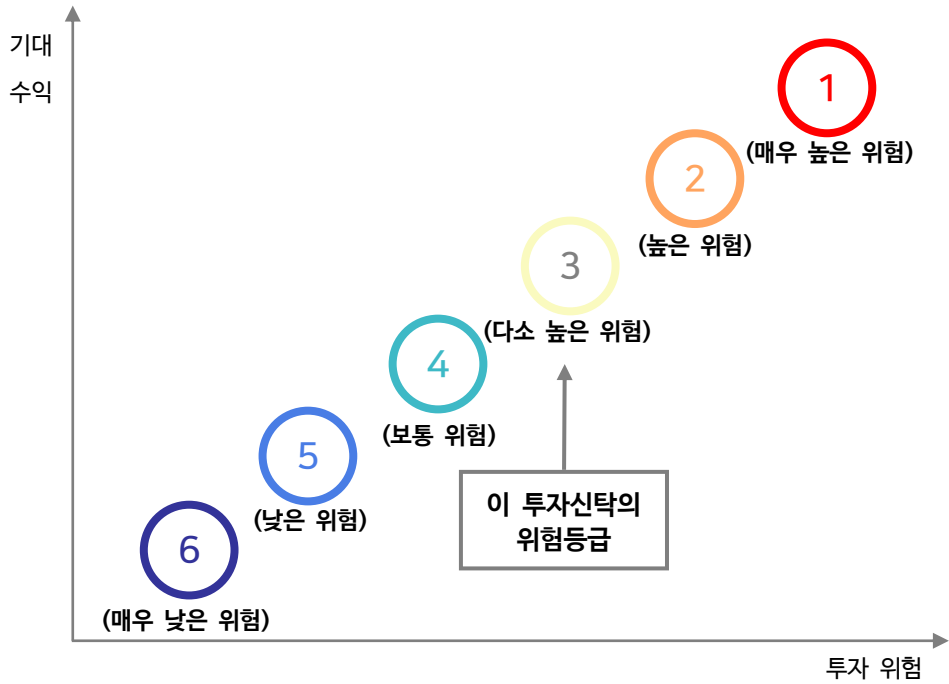
| | |
|--------------------|--|
| | 될 수 있습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중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투자신탁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부도자산 등의 평가 위험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 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하진 않으며, 이 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오퍼레이션 위험 |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서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1) 설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상세설명 |
|------|----------|--|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보통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 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6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 1) 위 분류기준은 당사의 내부기준으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되면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3)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 4)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5)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6)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 7)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 등급 | 1(고위험) | 2 | 3 | 4 | 5 | 6(저위험) |
|------|--------|-------|-------|-------|------|--------|
| 표준편차 | 25%초과 | 25%이하 | 15%이하 | 10%이하 | 5%이하 | 0.5%이하 |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매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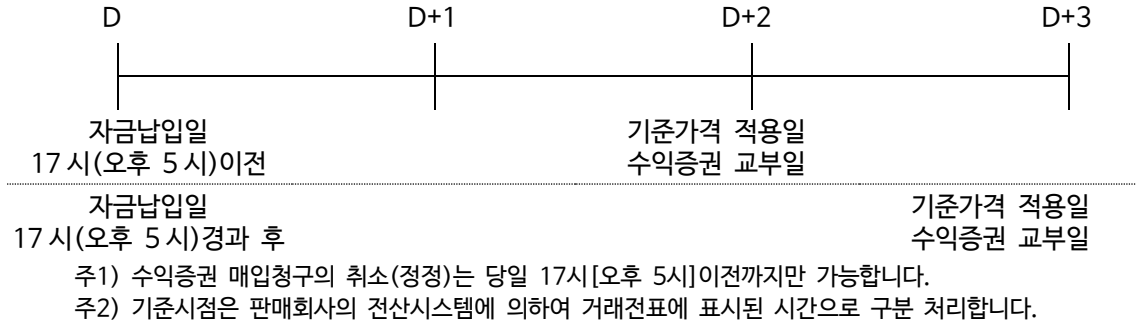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Cp2클래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② Cp2E클래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③ A클래스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④ Ae클래스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⑤ C클래스 :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⑥ Ce클래스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⑦ S클래스: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⑧ Cp클래스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⑨ Cp-E클래스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⑩ S-P클래스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⑪ I클래스 :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 ⑫ W클래스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 ※ 판매회사에 따라 최소투자규모 등 별도의 가입제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② 17시[오후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③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환매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5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9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6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0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는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부터 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5)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5 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6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일부환매

- ①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①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 ③ ②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③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해서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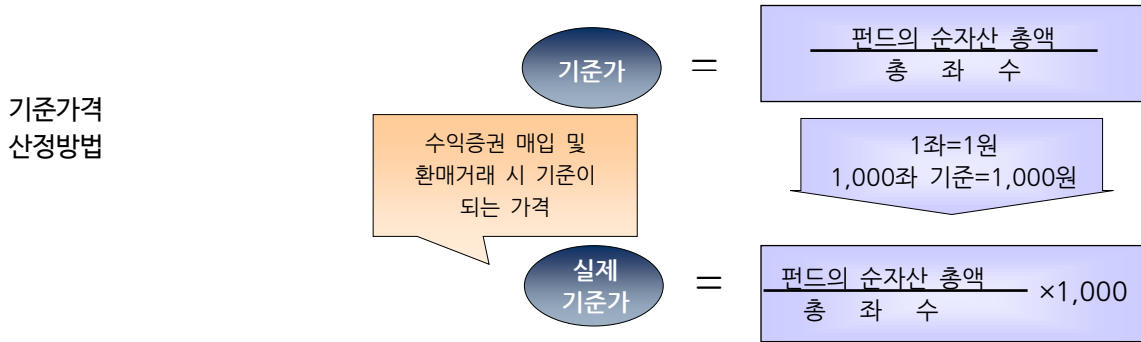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장소 |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상장주식 | 평가 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공표하는 가격 |
| 장외파생상품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그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정 |
| 비상장채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
| 기업어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3) 집합투자증권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① 구성 : 대표이사, 위험관리팀장, 운용관련본부장, 준법감시인, 신탁회계팀장
- ②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수수료 구분 | 수수료율 | | | | | | | | | | | |
|--------|----------------|----------------|----|----|---|---|--------------------------|----|------|-----|-----|-------|
| | A | Ae | C | Ce | I | W | S | Cp | Cp-E | S-P | Cp2 | Cp2-E |
| 판매 수수료 | 납입 금액의 0.8% 이내 | 납입 금액의 0.4% 이내 | 없음 | | | | 3년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없음 | | | | |
| 환매 수수료 | 없음 | | | | | | | | | |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율(연간,%) | | | | | |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 증권거래 비용 |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회사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기타비용 | 총 보수 비용 (TER) | | | |
| Cp2 | 0.450 | 0.400 | 0.015 | 0.015 | 0.003 | 0.883 | 1.383 | 0.003 | |
| Cp2-E | 0.450 | 0.200 | 0.015 | 0.015 | 0.003 | 0.683 | 1.183 | 0.003 | |
| A | 0.450 | 0.400 | 0.015 | 0.015 | 0.003 | 0.883 | 1.383 | 0.003 | |
| Ae | 0.450 | 0.200 | 0.015 | 0.015 | 0.003 | 0.683 | 1.183 | 0.003 | |
| C | 0.450 | 0.820 | 0.015 | 0.015 | 0.003 | 1.303 | 1.803 | 0.003 | |
| Ce | 0.450 | 0.410 | 0.015 | 0.015 | 0.003 | 0.893 | 1.393 | 0.003 | |
| S | 0.450 | 0.200 | 0.015 | 0.015 | 0.003 | 0.683 | 1.183 | 0.003 | |

| | | | | | | | | |
|------|---------|-------|-------|-------|--------|-------|-------|--------|
| Cp | 0.450 | 0.500 | 0.015 | 0.015 | 0.003 | 0.983 | 1.483 | 0.003 |
| Cp-E | 0.450 | 0.250 | 0.015 | 0.015 | 0.003 | 0.733 | 1.233 | 0.003 |
| S-P | 0.450 | 0.180 | 0.015 | 0.015 | 0.003 | 0.663 | 1.163 | 0.003 |
| I | 0.450 | 0.030 | 0.015 | 0.015 | 0.003 | 0.513 | 1.013 | 0.003 |
| W | 0.450 | 0.000 | 0.015 | 0.015 | 0.003 | 0.483 | 0.983 | 0.003 |
| 지급시기 | 매3개월 후급 | | | | 사유 발생시 | - | - | 사유 발생시 |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3)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 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 및 기타비용과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상기의 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5%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 구분 |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Cp2클래스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93 | 290 | 503 | 1,117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 145 | 451 | 779 | 1,707 |
| Cp2-E 클래스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2 | 224 | 391 | 872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 124 | 387 | 670 | 1,475 |
| A클래스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72 | 367 | 579 | 1,188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 224 | 528 | 853 | 1,774 |
| Ae클래스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11 | 264 | 429 | 909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 164 | 425 | 707 | 1,509 |
| C클래스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37 | 426 | 736 | 1,615 |

| | | | | |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 189 | 586 | 1,007 | 2,181 |
| Ce클래스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94 | 293 | 508 | 1,129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 146 | 454 | 785 | 1,719 |
| S클래스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2 | 224 | 391 | 872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 124 | 387 | 670 | 1,475 |
| Cp클래스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03 | 322 | 559 | 1,237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 156 | 483 | 834 | 1,822 |
| Cp-E클래스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7 | 241 | 419 | 934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 129 | 403 | 697 | 1,533 |
| S-P클래스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0 | 218 | 379 | 848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 122 | 380 | 658 | 1,451 |
| I클래스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4 | 169 | 294 | 661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 106 | 332 | 575 | 1,273 |
| W클래스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1 | 159 | 277 | 623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 103 | 322 | 559 | 1,237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 0.5%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5)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

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 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공제제도 |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일 경우 15%)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소득세 별도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
| 분리과세한도 |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단,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
| 연금외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 해지가산세 | 없음 |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계좌 승계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②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③ 세액공제(2015. 1. 1. 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퇴직연금소개 →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신규 펀드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신규 펀드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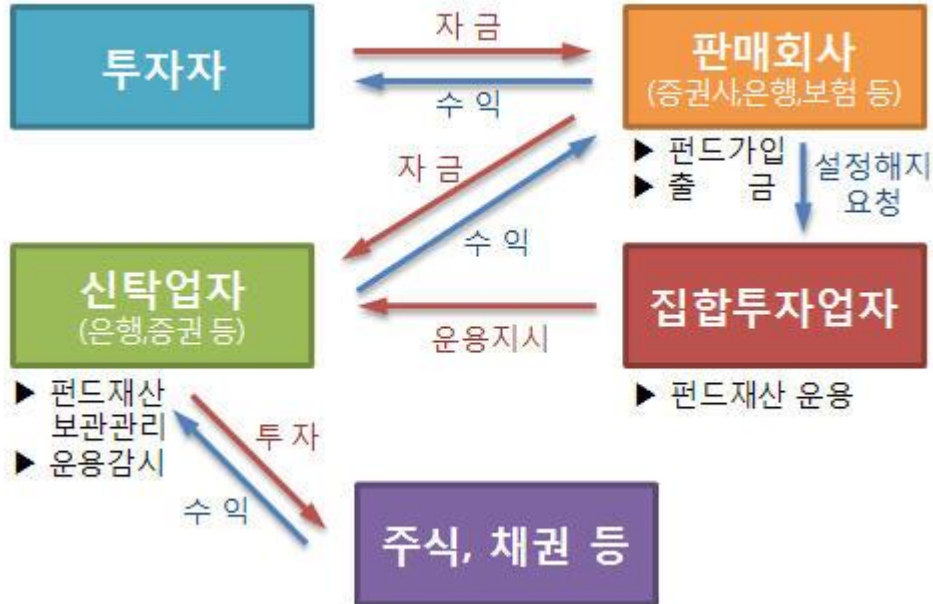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규 펀드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 | |
|--------------------------|--|
| 회 사 명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1 길 10 (성수동 1 가) (☎ 6308-0500) |
|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 www.trustonasset.com |
| 자본금 | 137.75억원 |
| 이해관계인 (2018.3.31. 기준) | -이해관계신탁업자(30%이상) : 우리은행 (41.13%) |
| 회사연혁 | 1998.04 IMM투자자문(주) 설립 2007.06 순이익 1% 사회환원 이행 결의 2007.12 트러스톤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 2008.0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전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영지시 등의 업무 수행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 ① 선관 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 ①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 구분 | 제20기 (2017.12.31) | 제19기 (2016.12.31) |
|--------------|-------------------|-------------------|
| 1. 현금및예치금 | 22,511 | 25,447 |
| 2. 유가증권 | 51,470 | 45,108 |
| 3. 대출채권 | 416 | 403 |
| 4. 유형자산 | 15,769 | 9,699 |
| 5. 기타자산 | 9,569 | 18,094 |
| 자산총계 | 99,735 | 98,751 |
| 1. 차입부채 | 5,000 | - |
| 2. 기타부채 | 4,321 | 4,991 |
| 부채총계 | 9,321 | 4,991 |
| 1. 자본금 | 13,775 | 13,775 |
| 2. 자본잉여금 | 11,360 | 11,360 |
|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519 | 3,667 |
| 4. 이익잉여금 | 69,656 | 69,680 |

| | | |
|------------------|---------------|---------------|
| 5. 기타자본항목 | -8,896 | -4,722 |
| 자본총계 | 90,414 | 93,760 |
| 부채 및 자본총계 | 99,735 | 98,751 |
| 영업수익 | 22,948 | 21,375 |
| 영업이익 | 2,605 | 3,907 |
| 당기순이익 | 1,711 | 3,567 |

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한 별도재무제표기준 실적임

라. 운용자산 규모

(2018.3.31. 현재/단위:억원)

| 구분 | 증 권 | | | | | 특별자산 | 총계 |
|-----|--------|--------|-------|-------|-------|------|--------|
| |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 파생형 | 재간접형 | | |
| 수탁고 | 69,337 | 16,380 | 5,172 | 2,226 | 1,461 | 541 | 95,117 |

※ 일임 및 자문 포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조사, 분석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1) 업무 위탁 내용

-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과 관련된 조사 및 분석 업무
-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의견 제공 및 추천 등

(2) 업무 위탁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효율적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로 파운트투자자문을 선정하였습니다.

(3) 보수 : 투자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4)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주식회사 파운트투자자문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50, 6층 (070-4066-3035) |
| 회사연혁 | 2016. 8. 12. 설립(상호: 주식회사 파운트파트너스) 2017. 2. 10. 투자자문업 등록 2017. 2. 21. 상호 변경 (파운트파트너스에서 파운트투자자문으로 변경)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 |
|-----------|-----------------------------|
| 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1588-2588) |
| 인터넷홈페이지주소 | www.ibk.co.kr |
| 회사연혁 | 1961.08 중소기업은행 설립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 ② 책임
-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 ③ 연대책임
-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하나펀드서비스(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9층 (02-6714-4615) |
| 회사연혁 | 2003.04.01 설립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회사명 | 주소 |
|-------------|-----------------------------------|
| KIS채권평가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 4층 |
|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9층 |
| 나이스채권평가주식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4층 |
| 주식회사에프엔가이드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센터빌딩 4층 |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⑤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3) (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4)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트론 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1)의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트론

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으로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1) 평가 항목

리서치 서비스의 양적·질적 측면, 세미나개최, 기업탐방 등 정량적 부문과 신뢰도, 성실성 등 정성적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2)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 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 용어 | 내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